보험금청구서 단체상해보험 用



1. 피보험자 인적사항 및 보상안내 받으실 분

(' * ' 무분은 필수 기세사양입니다.)	回達然

직원 성명* 생년월일* 피보험자 성명* 주민등록번호* 소속회사명* 직원과의 관계* 휴대전화* 의료수급자 여부 접수안내* 문자 팩스 E-mail e-mail 지급안내* 팩스 팩스(번호) 문자 e-mail * 접수 및 지급안내는 문자메시지(알림톡)로 기본 발송되며, 발송방법 추가 선택 가능합니다. 있음 없음 2. 다른 회사 보험가입현황(손해보험, 생명보험, 공제, 단체보험 등) 보험회사명 1.() 2.(3.()) *상해: 넘어지거나 부딪히는 등 신체가 다친 경우 / 질병: 고혈압, 당뇨 등과 같이 신체 내부의 질환이 발생한 경우 *동일 상해 사고일자 또는 동일 질병 진단명으로 당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이력이 있으시면 추가청구에 체크해 주세요. 사고유형 교통상해 상해 질병 사고일시 20 년 월 일 사고장소 주요증상/진단명 내원경위 해당 시 체크 임신·유산·출산 관련 한방진료 치아진료 산재사고·공상 4. 보험금 입금 요청계좌 *수익자 이외의 타인계좌로 받으시는 경우 '본인 및 타인신분증', '위임장'과 '인감증명서' 또는 '본인서명사실확인서'를 제출하셔야 합니다. *수령계좌 미기재시 최근 지급계좌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. 은행명* 계좌번호* 예금주명* 주민번호* 본인은 '보험금 지급', '보험금 지급절차안내문'을 통하여 보상절차에 관한 정보(담당부서 및 연락처, 지급절차, 예상심사기간, 지급기일 등)를 안내 받고 이를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일* 보험금청구자* (피보험자) 법정대리인 본인은 다른 법정 대리인(친권자) 1인과 합의하여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합니다.(서명) 반드시 피보험자가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 피보험자가 미성년자, 금치산자, 한정치산자인 경우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서명하시기 바랍니다. 부모가 공동 친권자인 경우 다른 일방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면 부모 중 일방이 부모 공동명의로 서명할 수 있습니다. 보험사기(고의사고, 허위사고, 허위입원·진단·장애, 피해과장, 사고 후 보험가입 등)는 범죄이며, 형법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 또한 이러한 사기 내용 확인 시 보험사는 보험금을 부지급 하거나, 보험계약 해지 및 취소 등을 할 수 있습니다.

* 보험금 청구시 '보험금 청구를 위한 필수동의서'를 함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.

[필수]보험금청구를위한개인(신용)정보처리동의



귀하는 개인(신용)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조회, 제공에 관한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, 개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이외의 개인(신용)정보 제공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본 동의는 '보험금 청구'를 위해 필수적인 사항이므로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 관련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.

1. 수집·이용에 관한 사항

수집·이용 목적	- 보험금지급 · 심사(손해사정 및 잔존물대위, 구상업무, 법률자문, 의료자문 관련) 및 보험사고 조사 (보험사기 조사 포함) - 보험금청구서류 접수대행 서비스 및 교통사고 처리내역 발급 간소화 서비스 - 민원처리 및 분쟁대응, 금융거래(보험료 및 보험금 등 출 · 수납을 위한 금융거래 신청, 자동이체 등 접수) 관련 - 업무 보험계약 및 보험금 청구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대한 법규 및 계약상 의무 이행 - 계약체결, 보험금청구 등으로 고객이 제공한 개인(신용)정보의 최신성 유지
보유 및 이용기간	동의일로부터 거래 종료 후 5년까지 (단, 다른 관련 법령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령상의 보존기간을 따름) "거래 종료일이란" ①보험계약 만기, 해지, 취소, 철회일 또는 소멸일, ②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완성일(상법 제662조), ③채권·채무 관계 소멸일 중 가장 나중에 도래한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한 날을 말한다.

수집·이용 항목

고유식별정보	<u>주민등록번호, 외국인등록번호, 여권번호, 운전면허번호</u> 위 <mark>고유식별정보 수집·이용</mark> 에 동의하십니까?	동의함	등의하지 않음
민감정보	피보험자 · 보험금청구권자의 질병 · 상해에 관한 정보(진료기록, 상병명 등) 포함) 및 손해사정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(검찰 · 경찰 등 수사기 등으로부터 본인의 위임을 받아 취득한 각종 조사서, 증명서, 진료기록 등에 를 위 민감정보 수집·이용에 동의하십니까?	관, 공공 · 국가	<u>기관, 의료기관</u>
개인(신용)정보	일반개인정보: 성명, 주소, 생년월일, 이메일, 유·무선 전화번호, 성별, 국적, 직업, 피가족관계증명서류,주민등록(초)등본, 국내거소신고번호 신용거래정보: 금융거래 업무 관련 정보(보험금 지급계좌 등), 보험계약정보(상품종류보험금정보(보험금 지급사유, 지급금액 등), 법률 및 국제협약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위 개인신용정보 수집·이용에 동의하십니까?	루, 기간, 보험가입	

2. 제공에 관한 사항

=.·· O* E E ··	10
제공받는 자	- 공공기관 등: 금융위원회, 국토교통부, 금융감독원, 보험요율산출기관, 국민건강보험공단, 관할보건소, 건강보험 심사평가원, 국세청 등 법령상 업무 수행기관(위탁사업자 포함) -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: 한국신용정보원 - 보험회사 등: 생명· 손해보험회사, 국내 재보험사, 공제사업자, 체신관서(우체국보험) - 국외 재보험사(실제 국외 재보험사로 정보가 이전되는 보험계약에 한함) - 금융거래기관: 계좌개설 금융기관, 금융결제원 - 계약관계자: 피보험자, 보험금 청구권자 - 보험협회 등: 생명·손해보험협회



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	- 공공기관 등: 법령에 따른 업무수행(위탁업무 포함) -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: 개인(신용)정보 조회, 신용정보의 집중관리 및 활용 등 법령에서 정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수행, 교통사고처리내역발급간소화서비스 - 보험회사 등: 중복보험 확인 및 비례보상, 재보험금 청구 - 국외 재보험사: 재보험금 지급ㆍ심사 - 금융거래기관: 금융거래 업무 - 계약관계자: 손해사정내용 관련 정보 제공 - 보험형회 등: 보험금 지급ㆍ심사 관련 업무지원(보험금청구서류 접수대행 서비스 등)
보유 및 이용기간	- 보험협회 등: 보험금 지급·심사 관련 업무지원(보험금청구서류 접수대행 서비스 등)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(관련 법령상 보존기간을 따름)

* 외국 재보험사의 국내지점이 재보험금 청구 등 지원 업무를 위탁하기 위한 경우 별도의 동의 없이 외국 소재 본점에 귀하의 정보를 이전할 수 있습니다.

제공 항목

국내	고유 식별정보	주민등록번호, 외국인등록번호, 여권번호, 운전면허번호 위 고유식별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?	동의함	동의하지 않음		
	민감정보	피보험자·보험금청구권자의 질병·상해에 관한 정보(진료기록, 상병명 등), 보험 및 손해사정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 (검찰·경찰 등 수사기관, 공공 등으로부터 본인의 위임을 받아 취득한 각종 조사서, 증명서, 진료기록 등에 포위 민감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?	ㆍ국가기관, 의	료기 <u>관</u>		
	개인 (신용) 정보	일반개인정보: 성명, 주소, 생년월일, 이메일, 유·무선 전화번호, 성별, 국적, 직업, 피보험자와 수익자의 관계, 가족관계증명서류, 주민등록(초)등본, 국내거소신고번호 신용거래정보: 금융거래 업무 관련 정보(보험금 지급계좌 등), 보험계약정보(상품종류, 기간, 보험 가입금액 등), 보험금정보(보험금 지급사유, 지급금액 등), 법률 및 국제협약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정보] 신용능력정보: 소득 및 재산 정보 위 개인신용정보 제공*에 동의하십니까?				
국외**	개인 (신용) 정보	일반개인정보: 성명, 주소, 생년월일, 성별, 직업 신용거래정보: 보험계약정보(상품종류, 기간 등), 보험금정보(보험금 지급사유, 지급금 위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?	액 등) 동의함	등의하지 않음		

^{*}업무위탁을 목적으로 개인(신용)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별도의 동의 없이 업무수탁자에게 귀하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. (홈페이지[www.carrotins.com]에서 확인 가능)
**실제 국외 재보험사로 정보가 이전되는 보험계약에 한함



동의함

동의하지 않음

3. 조회에 관한 사항

조회 대상 기관	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, 보험요율산출기관, 국토교통부(자동차보험 등 조회가 필요한 보험종목에 한함), 생명ㆍ손해보험협회					
조회 목적	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: 보험사고·보험사기 조사 및 보험금지급·심사, 교통사고처리내역발급간소화 서비스 보험요율산출기관, 국토교통부: 보험사고·보험사기 조사 및 보험금지급·심사, 법령에 의한 업무수행 등 생명·손해보험협회: 보험금청구서류 접수대행 서비스					
조회 동의의 효력기간	해당 보험거래 종료 후 5년까지 동의의 효력이 지속됩니다.					
조회 항목						
고유식별정보	<u>주민등록번호, 외국인등록번호, 여권번호, 운전면허번호</u> 위 고유식별정보 조회에 동의하십니까? 등의하지 않 등의하지 않 등의하지 않					
민감정보	피보험자·보험금청구권자의 질병·상해에 관한 정보(진료기록, 상병명 등), 교통법규 위반정보 및 교통사고조사기록(당사의 요청에 따라 보험요율산출기관이 경찰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)* *자동차보험 등 해당 정보의 조회가 필요한 보험종목에 한함					
	위 민감정보 조회에 동의하십니까? 동의하지 않					
	일반개인정보: 성명, 국내거소신고번호, 면허의 효력에 관한 정보(자동차보험 등 해당 정보의 조회가 필요한 보험종목에 한함)					
개인(신용)정보 신용거래정보: 보험계약정보(상품종류, 기간, 보험가입금액 등), 보험금정보(보험금 지급사유, 지급급액						

					본인	(서명)
캐롯손해보험 주식회사	20	년	월	일	법정대리인 1	(서명)
					법정대리인 2	(서명)

- * 만14세 미만의 미성년자,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의 경우 법정대리인(친권자 또는 후견인)이 서명하시기 바랍니다.
- * 부모가 공동친권자인 경우 다른 일방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면 부모 중 일방이 부모 공동명의로 서명할 수 있습니다.

위 <mark>개인신용정보 조회</mark>에 동의하십니까?

* 보험회사는 【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】제32조 제6항 제11호 및 동 시행령 제28조 제11항 제2호에 따라 보험사기 조사ㆍ방지를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개인(신용)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.

보험금 지급절차 안내문



1) 피보험자 인적사항 및 보상 안내 받으시는 분

(1) 청구서류가 접수되면 아래 절차에 따라 지급심사가 이루어집니다.



- (2) 보상담당자는 서류가 접수된 이후에 정해지며 당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(☎1566-0300)로 문의하시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- (3) 우편접수: (04551) 서울시 중구 을지로 100, 파인에비뉴 B동 20층 디지털보험운영팀

2) 의료심사

- (1) 상해·질병보험 등에서 약관에 따른 보험금 지급여부와 지급금액 결정을 위해 진단서, 의무기록 등 제출하신 자료를 기초로 전문의에 의한 의료심사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.
- (2) 의료심사를 위해 의무기록 등을 병원으로부터 입수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동의서를 받아 진행되며, 제출하신 진단서 등의 적정성 판단을 위해 재감정을 하는 경우 비용은 캐롯손해보험이 부담합니다.

3) 보험사간 분담지급(비례보상 적용)

- (1) 상해·질병으로 인한 의료비, 변호사선임비용, 교통사고처리지원금, 벌금, 일상생활배상책임, 민사소송법률비용, 홀인원비용, 6대 가전제품 수리비용, 펫치료담보 등의 실손 보상 담보를 복수로 가입하신 경우 보험약관에 따라 비례보상원칙을 적용하여 보험계약별로 보험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보험금 「청구서류 접수대행 신청서」를 작성하시면 타사에 접수 대행이 가능하며, 다른 회사에 자료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셔야 합니다. 다만 다른 회사에서 사고조사 등의 사유로 접수 대행이 거절 될 수 있고 이 경우 가입된 보험사에 직접 청구 하셔야 합니다.
- (2) 타 보험사의 가입사항은 손해보험협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4) 예상 지급기일 및 지급심사 지연안내

- (1) 상해·질병사고는 최종 서류 접수일부터 3영업일, 재물·배상책임사고는 지급보험금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이며 상황에 따라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.
- (2) 약관상 정해진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연사유 및 지급예정일을 안내하여 드리며, 지급예정일을 초과하는 경우 규정된 내용에 따라 지연이자를 산정하여 드립니다.

5) 보험금 부지급 결정 및 재심사 청구

- (1)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금 부지급으로 결정되는 경우, 구체적인 사유를 고객님께서 요청하신 경로로 안내하여 드리며, 부지급 결정에 동의하시지 않는 경우 담당자에게 재문의 또는 소비자보호팀으로 통보하시면 재심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
 - ① 인터넷 접수 : 당사 홈페이지(www.carrotins.com) 내 전자민원 창구
 - ② 우편접수: (04551) 서울시 중구 을지로100, 파인에비뉴 B동 20층 캐롯손해보험 주식회사 소비자보호팀
 - ③ 전화상담: 1566-0300
- (2)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금융감독원(국번없이 1332)에 조정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.

6)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

보험금 청구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입니다.



7) 진료비 확인 신청 제도

- (1) 환자가 병·의원 등에서 부담한 비급여진료비가 적정하였는지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확인해주는 권리구제 제도입니다.
- (2) 진료비확인 요청 범위 : 급여진료비 중 '전액본인부담', 비급여진료비 중 '선택진료료', '선택진료료 이외' 항목의 비용
- (3) 진료비 확인방법: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, 모바일 앱, 우편, 팩스, 방문상담 가능(대표전화: 1644-2000)

8) 보험금 지급안내 및 절차 조회 방법

- (1) 보험금 심사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은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(www.carrotins.com)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- (2)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청구 시 선택하신 방법으로 지급금액이 안내 됩니다.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지급금 안내 시 통보되는 담당자 전화번호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.

9) 보험금 가지급 제도

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하기 위하여 약관에서 정한 지급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보험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% 이내의 금액으로 산출된 보험금을 가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. 단, 최종 결정 보험금이 없거나 가지급 보험금보다 작을 경우 지급된 보험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.

10) 진료비 확인 신청 제도

- (1)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여부 결정을 위해 사고현장조사, 병원방문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고객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 보험업법에 따라 공인된 손해사정법인에게 조사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, 그 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.
- (2) 보험계약자는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, 아래의 경우에는 그 비용을 회사가 부담합니다.
 - (보험감독규정 9-16조: 보험계약자등의 손해사정사 선임)
 - ① 손해사정이 착수되기 이전에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에게 손해사정사의 선임 의사를 통보하여 동의를 얻은 때
 - ②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회사가 보험사고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경과하여도 손해사정에 착수하지 아니 한 때
- (3) 보험회사는 아래의 경우 보험계약자 등의 손해사정사 선임 요청에 동의함을 원칙으로 합니다. 단, 이외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등의 손해사정사 선임 요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.
 - ① 실손의료비 단독 청구건
 - ② 당사가 위탁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
 - ③ 대형 재해 혹은 이에 준하는 사고에 있어 국가에서 지정한 손해사정사 선임에 협조하여야 하는 경우
- (4) 아래의 경우 보험계약자 등의 손해사정사 선임 요청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 - ① 실손 의료비와 함께 진단비, 수술비, 일당, 후유장해 등 정액담보 보험금이 함께 청구된 경우
 - ② 보험금 청구서류 심사만으로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여 조사나 확인이 불필요한 경우
 - ③ 보험업법 제2조 제19호에 따른 전문보험계약자의 계약
 - ④ 보험업법 시행령 제1조의2 제3항 각호에 따른 보험계약
 - ⑤ 보험업 관련 법령에 따른 손해사정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
 - ⑥ 건전한 금융질서를 해칠 소지가 있는 경우(보험 사기 연루자, 제재 대상자, 악성 민원 다발자 등)
 - ① 손해사정사가 주요 경영정보를 공시하지 않은 경우
 - ⑧ 보험업법 제178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에서 주관하는 손해사정 관련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
- (5) 손해사정사 선임이 필요한 보험사고에 대해 보험회사가 위탁(선임)한 손해사정사가 업무를 진행할 수 있으며, 보험계약자 등이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가 위탁(선임)한 손해사정사가 단독으로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.